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97
----------	-------

발의연월일 : 2019. 6. 24.

발 의 자 : 추경호 · 김선동 · 최교일
김광림 · 김정재 · 홍철호
박명재 · 엄용수 · 윤상직
이채익 · 정갑윤 · 이종구
정태욱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숙박 또는 식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임금지급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임.

물론 현행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숙식을 제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효과가 발생해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나,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서면동의

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제도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안 제6조제4항제3호가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가목 중 “임금”을 “임금.”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u>임금 <단서 신설></u></p>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p> <p>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u>임금. 다만,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u></p>

<p>나. (생략)</p> <p>⑤ ~ ⑨ (생략)</p> <p>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생략)</p> <p>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u>나목</u>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p> <p>1. ~ 5. (생략)</p>	<p><u>100분의 7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가목</u> <u>및 나목</u>----- ----- -----.</p> <p>1. ~ 5. (현행과 같음)</p>
--	--